

# 여성들에게 희망을

---

2018년 한국여성재단 <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> 지원사업 안내

# 〈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〉 지원사업

- ※ 본 사업은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.
- ※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수행 절차 및 회계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.

## 1. 분야명

-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

## 2. 지원사업 취지

우리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‘폭력’ 문제 해결 및 예방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.

## 3. 지원 내용

### 1) 지원사업 구분

지원분야	사업추진기간	지원대상	지원예산(원)
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	2018년 2월 ~ 2018년 11월 (총 10개월 간)	비영리 여성단체 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 대단체로만 참여 가능	• 사업비 지원 • 최대 2천5백만원

### 2) 신청사업 내용(※ 세부 주제 예시)

-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
  - : 성폭력, 가정폭력, 전시폭력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, 신체적, 정신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
  - :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  - : 기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주제의 사업 등

※ 단, 사업내용이 ‘교육’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 
: 상담활동가 양성교육,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

#### 4. 신청 대상

-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
  - ※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.
  - 단,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**※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**

<p>※ 신청제외 단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민사회단체</li> <li>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/시설</li> <li>-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 포함) 및 일반협동조합</li> <li>-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</li> <li>- 대학 내 부설기관</li> <li>-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</li> <li>-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</li> </ul>
--

#### 5. 신청사업 형태

구분		세부내용
사업 성격	신규사업	. 본 사업 추진기간(1년)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
	연속(동일)사업	. 2017년에 지원된 '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'의 연속 사업(※ 3년 연속(동일) 사업 신청 가능)
사업 진행방식	단독사업	.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
	연대사업	.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·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※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

#### 6. 신청방법

- ① 접수기간 : 2017년 11월 6일(월) ~ 12월 1일(금)
  - ※ 12월 1일(금),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(우편 소인 기준 아님)
  - ※ 쿼서비스 이용 접수,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
- ② 접수방법 : **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**
  - ※ **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**
- ③ 접수처 : (0400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(서교동)  
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

④ 제출서류

**※ 아래 두 가지 방법(온라인과 우편)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**

구분	세부내용
온라인 접수	① <b>온라인접수 바로가기</b> 클릭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b>[접수방법]</b>              i) 단체(기관) 회원가입 → ii)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            → iii) 사업 신청 정보 기재 → iv)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→ v)              사업 신청하기 클릭           </div>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※ 첨부파일명 : 2018_여성안전_단체명.hwp
우편 접수	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(소정양식)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※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사본 1부

7. 공모 일정

추진시기	내 용	비 고
2017년 11월 6일(월)	사업 공고	※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
2017년 11월 6일(월) ~ 12월 1일(금)	접수	※ 12월 1일(금),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
2017년 12월 4일(월) ~ 2018년 1월 31일(수)	사업 심사 (사무처/서류/면접)	<b>※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</b>
2018년 2월 중순 (예정)	결과 발표	※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2018년 2월 중순	교부금신청서 제출	※ 최종 선정 이후 진행
2018년 2월 중	네트워크 워크숍	
2018년 2월 ~ 11월	사업 진행	
2018년 11월 20일(화) 이내	최종보고서 제출	

※ 사업 신청 시, 교부금신청서 제출, 실무자 워크숍,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 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.

## 8.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

- 지원사업과 관련, 중앙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
-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(정당, 친목단체 등)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-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
- 경상적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사무실임대료, 사무실집기)가 주된 사업
-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(비품, 물품) 관련사업
-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, 후원사업
-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
-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

### ② 사업신청의 제한

- **2015년~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(자유공모, 기획공모, 여성과 아동 폭력,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)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**  
**※ 2016년~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**
-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,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- 연대사업의 경우,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
-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, **지원 분야와 상관없이(자유주제, 신생단체지원,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)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(※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必)**
-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,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(센터, 상담소 등)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

### ③ 예산 편성

-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. 단,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
- **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**
- **관리운영비 중 인건비(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)와 운영비(비품구입비, 수용비 및 수수료 등)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20%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가능**  
단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(인건비, 임대료, 경상운영비 등)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
 ※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## 9. 문의

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

TEL.02-336-6385 / E-mail. [free-hyune@hanmail.net](mailto:free-hyune@hanmail.net)